
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생산차질 기업에 대한 선제적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의

2020. 1. 31

· 건의처 : 고용노동부



창원상공회의소

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생산차질 기업에 대한 선제적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의

I. 현황

-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1월 31일부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근로기준법을 시행한 바 있음.
- 주요 개정내용은 돌발적 상황에 대한 대처, 일시적 업무량의 폭증 등 사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근로시간 총량을 법정 기준보다 늘려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근로기준법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(1주 12시간)을 연장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으로 추가한 것임.
-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최근 중국 우한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한 위기경보가 '주의'에서 '경계'단계로 격상된데 따라 방역과 치료 등 업무와 관련한 특별연장근로는 인가 신청 접수 시 신속히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.

II. 문제점

-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중국 내 산업생산이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, 다수의 공장들이 가동을 멈춘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. 실제로 국내기업의 중국 현지 공장들도 다수 가동을 멈춘 상황임.

- 중국은 창원지역 산업의 최대 수입 대상국으로 전체 수입 물량의 20% 내외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. 특히 기계 요소, 전기부품, 철강판 등 중간재와 원자재성 제품 수입이 많아 산업생산에 있어 수급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 국가임.
- 중국과 분업구조가 짝은 국내 산업의 특성 상 중국으로부터의 부품 또는 원자재 수급이 어려울 경우 국내 제품의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임. 실제로 창원 소재 다수 기업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생산 중단이 예정되어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.

Ⅲ. 건의

- 중국으로부터 부품 및 원자재 수급 차질로 생산을 중단하거나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기업에 한해, 향후 수급이 안정화 되었을 때 발생하는 업무량 폭증에 대해서는 이를 한시적으로 근로시간 총량 기준을 늘릴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.
- 아울러 생산차질을 빚고 있는 기업이 향후 합리적이고 예상 가능한 생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, 피해사실이 소명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를 선제적으로 허용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.

2020. 01. 31

창원상공회의소 회장 한 철 수

